규정/REGULATION MONTGOMERY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ABA-RB, ABA-RC, COC-RA, EBC-RA, ECA, ECM, ECM-RA, EEA, EEA-RA, JNA-RB, KGA-RA

책임 기관: Chief Operating Officer, Chief of School Support and Well-being

주차시설과 학생 운전
Parking Facilities and Student Driving

I. 목적

학교 운동장 내 학생 차량의 주차 가능 공간 할당에 관한 지역 학교 규칙 개발을 위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Board of Education-Board)가 소유하거나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MCPS)가 사용하기로 계약한 재산에 대하여 주차허가 및 주차시설, 이하 "MCPS 주차시설"로부터의 견인에 관한 Maryland 법의 시행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II. 배경

교육위원회 Policy ECA, *Sustainability* 에 따라 MCPS 는 직원들과 학생들에게 학교까지 운전에 의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지정된 거리 이상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과 거리에 상관없이 도보 통학이 위험한 학생들에게 버스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개별교육 프로그램(IEP)이 특별 또는 특정한 교통수단을 필요로 할 때 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II. MCPS 주차시설 승인 및 견인

A. MCPS 주차 시설은 MCPS 직원, 학생 및 가족, 기타 공인 방문객이 MCPS 학교/시설을 사용하거나 MCPS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B. Office of Finance(OOF)는 학생 및 직원 주차 허가에 대한 연간 지침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C. Department of Systemwide Safety and Emergency Management(DSSEM)는 학교장 또는 시설 행정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MCPS 주차 시설에 대한 견인 절차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DSSEM 는 Office of the Chief of District Operations 및 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과 상의하여 Maryland 법에 따라 견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견인 절차를 명시한 표지판을 눈에 띄게 배치해야 합니다. 견인차 회사는 MCPS 주차 시설에서 견인 차량 보관 시설까지 차량을 15 마일 이상 견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Maryland 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견인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DSSEM 는 학교장/시설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견인을 준비할 책임이 있습니다. 차량 견인은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주/시설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3. 교장/시설 관리자는 DSSEM 를 통하지 않고 견인 작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4. DSSEM 는 직원이 필요에 따라 MCPS 주차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 태그 또는 기타 표시를 제공합니다.

D. MCPS 주차 시설의 금지된 사용에는 다음 주차 조건이 포함됩니다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1. 오전 12 시에서 5 시 사이[1]

2. 소방도로 구간

3. 장애인 전용 공간의 경우, 해당 주차 공간의 사용을 승인하는 국가 발행 장애인 플래카드 또는 면허 태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차도나 줄무늬 구역을 차단하는 경우

5. MCPS Regulation COC-RA, *Trespassing or Willful Disturbance on MCPS Property* 에 규정된 MCPS 재산의 퇴거 요청을 거절한 경우;

[1] 학교장/시설 관리자는 학교 행사, 날씨, 그 밖의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 이후에 주차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견인을 요청함에 있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MCPS Regulation KGA-RA, *Community Use of Public Schools* 에 명시된 공공 시설의 MCPS 기능 또는 지역사회 사용과 관련되지 않은 상업적 및 주거적 사용과 관련된 경우

IV. 학생 주차

MCPS 는 자신이 교통수단을 제공해야 할 학생들을 위해 제한된 수의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 각 고등학교 교장은 매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 구내 주차 공간의 수를 결정합니다.

B. 학생들을 위한 주차 허가는 특권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C. 학생은 학교 구내에서 차량 운전과 주차문제에 관하여 해당되는 법과 교칙을 지켜야 합니다.

D. 학생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고등학교에서, 학교장은 학생 주차 공간 할당에 관한 지역 학교 규칙을 개발하기 위해, 학생 대표들과 상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 학교 규칙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직원들과 학생들에게 학교까지 운전에 의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도록 장려하고, 가능한 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을 장려하여 학생들의 학교 운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2. 학생 주차 허가를 할당하기 위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장애가 있는 학생

   b) 학교가 감독하는 직업/업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c) 시간제로 지역 고등 교육 기관에 다니는 학생

   d) 시간제 수업을 받는 학생들

   e)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또는

   f) 학교장 및/또는 대리인이 결정한 비정상적인 요구를 가진 학생

3. 허가 신청 마감일 및 갱신 요청

E. 학교장들 학부모/보호자와 학생들에게 이 규정과 학생 주차 및 학교의 주차 허가 신청 절차와 관련된 지역 학교의 규칙, 절차, 일정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합니다.

F. 다음 절차는 학생 주차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1. 학생 주차 허가증은 MCPS 양식 215-6, *학부모/보호자 개인 차량 학생 사용 요청서(Form 215-6, Parent/Guardian Request for Student Use of Private Vehicle)를 작성하고 승인한 후에만 발급됩니다.* 학교는 이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할 수 있지만, 종이 신청 과정도 제공해야 합니다.

2. 학생이 양식 215-6 에 명시된 차량 이외의 가족 차량을 이용해야 할 경우, 학교 구내에 주차하기 위해 학교 사무실에 차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3. 학생 및 교직원의 학교 주차 시설 이용을 위한 차량 태그는 OOF School and Financial Operations 팀에서 발급합니다.

4.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는 각 고등학교는 이사회에 의해 결정되고 양식 215-6 에 명시된 대로 환불되지 않는 수수료를 학생들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a) 학생 주차 수익은 독립 활동 기금(Independent Activity Fund-IAF)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수익은 IAF 회계 시스템에서 별도로 회계 처리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연간 연말 운동 재무 보고서 및 기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b) 각 육상 학교에 할당된 운영 예산의 일부는 학생 주차비에서 징수되는 수입에 대해 시스템 와이드 육상 감독이 조정하거나 이사회가 결정한 대로 조정합니다.

G. 유효한 학생 주차 허가증, 임시 허가증, 지역 학교 주차 규칙 또는 위의 섹션 III.C 위반 없이 주차하는 경우의 징계는 *MCPS Student Code of Conduct,* 및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이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주차 규칙 위반으로 등급별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등급별 경고에는 서면 경고 또는 위반 스티커 또는 일일 주차 요금에 대한 재정적 의무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2.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학생은 교장에 의해 결정되고 MCPS 규정 JNA-RB, *Collection of Student Financial Obligations* 에 따라 재정적 의무 이외의 적절한 대안적 수단으로 학교에 반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3. 등급별 경고 후 학생의 차가 견인될 수 있습니다. 견인은 위의 섹션 III.B 와 일치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 Annotated Code of Maryland, Transportation Article, Sections 21-10A-02, 03, and 06.

규정 변경사: 이전 규정 번호 215-3, 21, 1980 년 1 월 21 일; 1988 년 5 월 1 일 갱신; 1992 년 9 월 8 일; 1997 년 5 월 27 일; 2009 년 1 월 14 일; 2014 년 5 월 15 일; 2023 년 2 월 21 일.

MCPS 차별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조상, 출신국, 국적, 종교, 이민상태, 성, 성별, 성 역할, 성 표현, 성 취향, 가족 형태/부모 상태, 결혼 상태, 나이, 능력 상태(인지, 사회/정서, 신체), 빈곤,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또는 소속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우리 모두를 위한 형평성, 포용성, 수용을 창출, 육성 및 촉진하려는 우리 커뮤니티의 오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교육위원회는 증오를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상당한 방해를 일으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언어의 사용과/또한 이미지와 표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봅시다.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공평성이 내재적 편견, 정당화되지 않은 다른 관행,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MCPS 학생*에 대한 질문 또는 불평사항*	**MCPS 교직원*에 대한 질문 또는 불평사항***
Director of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850 Hungerford Drive, Room 55,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SWC@mcpsmd.org	Human Resource Compliance Office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1973년 504 장애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학생용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교직원용**
Section 504 Coordinator Office of Academic Officer Resolution and Compliance Unit 850 Hungerford Drive, Room 208, Rockville, MD 20850 240-740-3230 RACU@mcpsmd.org	ADA Compliance Coordinato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학생 또는 교직원*에의 성희롱 등, Title IX에 해당하는 성차별에 관한 조사나 불평사항	
Title IX Coordinator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850 Hungerford Drive, Room 55,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TitleIX@mcpsmd.org	

*차별에 관련된 민원은 다음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 (MCCR), William Donald Schaefer Tower, 6 Saint Paul Street, Suite 900, Baltimore, MD 21202, 410-767-8600, 1-800-637-6247, mccr@maryland.gov; 또는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OCR), The Wanamaker Building, 100 Penn Square East, Suite 515, Philadelphia, PA 19107, 1-800-421-3481, 1-800-877-8339 (TDD), OCR@ed.gov, 또는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본 통지는 개정된 연방 초등 및 중고등 교육법을 준수합니다.

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 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Office of Communication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 (Maryland Relay) 또는, PIO@mcpsmd.org로 연락하여 요청합시다. 수화 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 240-740-1800, 301-637-2958 (VP)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 또는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로 연락합시다.

2022년 6월